인천강화서희스타힐스(조합원 자격상실세대)1단지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4.12.30일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u>종합저축으로 전환</u>한 경우, 해당 주택의 <u>순위확인서</u>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032-933-7019

| 주택유형 | 규제지역여부 | 거주요건 | 재당첨제한 |
|------|--------|--|-------|
| 민영 | 비규제지역 | 해당지역 기타지역 인천광역시거주자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 없음 |
| 전매제한 | 거주의무기간 | 분양가상한제 | 택지유형 |
| 없음 | 없음 | 미적용 | 민간택지 |

| 구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 특별공급 접수일 | 일반공급 접수일 | 당첨자발표일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정 | 2024.12.30.(월) | 2025.01.09.(목) | 1순위2순위2025.01.10.(금)2025.01.13.(월) | 2025.01.17.(금) | 2025.01.20(월)~ 2025.01.23(목) | 2025.01.31(금)~ 2025.02.04(화) |

- 본 아파트는 2024년 9월2 일 동별승인이 완료대여 잔금 완납 후 입주가 가능한 후분양아파트입니다, 또한 건축물보존등기는 경과된 상태이나 현재 진행중인 기반시설공사 완료 및 사용승인 이후 대지권등기가 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사용검사 완료된 아파트임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조합원 분양(계약) 취소된 주택을 분양함에 따라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미 시공된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등에 대해 변경, 추가, 취소 등 을 요구하실 수 없으니 이 점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견본주택이 운영이종료되여 주택형별 샘플하우스는 분양홍보관에서 확인후 청약에 임하시기 바람니다. 본 아파트의 시행자는 대출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사용검사 (2023.09.01) 완료된 주택으로서 청약에 당첨된 동호수 마감재를 본 아파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준공된 세대이므로 세대의 기시공된 기본 제공품목 등 모든 내부 여건을 파악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사용승인이 완료된 주택으로 주택조시보증공사 (HUG)의 분양 보증 관련사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통 유의사항

1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12.18.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년12월30일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입니다.
- 금회 공급하는 17세대는 공급시기에 따른 관련법규 개정으로 1회차 공급한1040세대 (입주자모집공고2021.09.14)와 신청자격 요건이 상이하니 유의하기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 | | 일반공급 | | | |
|------------|------|---------------|-------|------------------|---------------|---------|-----|
| ଅଟମ୍ୟ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1순위 | 2순위 |
| 청약통장 자격요건 | 6개월 |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 | 치금 충족 | 1순위(12 개월 | 이상, 지역별·면적별 0 | 폐치금 충족) | 가입 |
| 세대주 요건 | - | - | - | 필요 | - | - |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 - | 적용 | - | 적용 | - | -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 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 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 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유형 | 당첨자 선정 | 예비입주자 선정 | 동호수 결정 |
|------|------------------|---|------------------------|
| 특별공급 |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 - -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
| 일반공급 |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 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 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h-starhills.com)에 공개하며, 공개기 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괴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유형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네이버인증서 | KB국민인증서 | 토스인증서 | 신한인증서 | 카카오인증서 |
|---------|-------|-------|--------|---------|-------|-------|--------|
| APT | | O | | | 0 | |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단지 유의사항

2

- 본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12,30(월)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2024-000661입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총 3회차 분양 중 3회차에 해당되며, 이로 인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3회에 걸쳐 입주자모집 승인을 각각 받으며, 계약일자, 중도금 일자 등은 모집 차수에 따라 상이하오니 차수별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1회차(1,2단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1회차」인천광역시 강화군청 건축허가과 24584호(2021.09.1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2회차(1단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2회차」인천광역시 강화군청 건축허가과 89089호(2022.10.2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3회차(1단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3회차」<mark>인천광역시 강화군청 건축허가과 109039호(2024.12.26</mark>)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3회차 분양분에 대해서만 적용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에 따른 입주자를 분할하여 모집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분할 모집시기 및 분양시기 별 주택공급에 관한 정보를 제공드리오니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한 입주자모집공 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제외)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구 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당첨자발표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 정 | 2025.01.09.(목) | 1순위 2025.01.10.(금) | 2순위 2025.01.13.(월) | - 2025.01.17.(금) | 2025.01.20(월)~ 2025.01.23(목) | 2025.01.31(금)~ 2025.02.04(화) |
| 방 법 | ■ (PC·모바일) 청약홈(09:00~17:30) ■ (현장접수) 사업업체 견본주택 | ■ (PC·모바일) 청약홈(09:00~17:30) ■ (현장접수)청약통장 가입은행 | | ■ (PC·모바일) 청약홈 | ■ 사업주체 인천강화지역주택조합 (주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 176) 분양홍보관1층 | |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

한 분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 자격으로 청약신청 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인천**시 강화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 전매제한기간 | 6개월 | 6개월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건축허가과 109039호(2024.12.2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창리 456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9~25층 14개동 총 1,040세대 중 조합원 자격상실세대 17세대 [특별공급 9세대(기관추천 1세대, 다자녀가구 2세대, 신혼부부 3세대, 노부모부양 1세대, 생애최초 2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5년 2월 (잔금납부 즉시)

■공급대상

3

| ᅎ태 | | 주택형 | 약식 | 주 | 주택공급면적(m²) | | 기타 계약 | ЖOŧ | 세대별 | 총공급 | | | 특별공급 | 급 세대수 | | | 일반공급 | |
|----|-------------|-----|-----------------|-----|------------|------------|----------|------------------|----------|---------|-----|----------|-----------|----------|-----------|----------|------|-------------------------|
| 구분 | | 모델 | 구곡8 (전용면적기준)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 며저 | 대지지분 | 세대수 | 기관 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 부부 | 노부모 부양 | 생애 최초 | 계 | ^{글진중} 급 세대수 |
| | | 01 | 059.9570A | 59A | 59.9570 | 23.1623 | 83.1193 | 32.6065 | 115.7258 | 44.0992 | 8 | 1 | 1 | 1 | 1 | - | 4 | 4 |
| | | 02 | 059.9669B | 59B | 59.9669 | 24.7290 | 84.6959 | 32.6121 | 117.3080 | 44.1065 | 3 | - | - | 1 | - | 1 | 2 | 1 |
| 민영 | 2024-000661 | 03 | 071.9950A | 71A | 71.9950 | 24.7433 | 96.7383 | 39.1534 | 135.8917 | 52.9533 | 2 | - | - | 1 | - | - | 1 | 1 |
| 주택 | | 04 | 071.9635B | 71B | 71.9635 | 27.2678 | 99.2313 | 39.1362 | 138.3675 | 52.9302 | 3 | - | 1 | - | - | 1 | 2 | 1 |
| | | 05 | 084.9495A | 85A | 84.9495 | 26.9085 | 111.8580 | 46.1985 | 158.0565 | 62.4815 | 1 | - | - | - | - | - | - | 1 |
| | 합계 | | | | | | | 17 | 1 | 2 | 3 | 1 | 2 | 9 | 8 | | | |

• 상기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주택전시관 및 분양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공급 신청 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 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x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3.3058]
- 주거 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 공용면적은 벽체,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기계/전기실, 부대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각 세대별 주거 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 공용면적(벽체면적 제외)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 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타입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 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주차장 및 공용부위 등 면적은 시설면적 비율로 배분하였습니다.
- 모집공고상의 면적은 제곱미터(m²) 소수점 4째자리까지 표현(소수점 4째자리에서 버림)되며 전체 총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대로 0.001m² 단위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하였고, 이에 따라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근린생활시설, 분양주택 상호간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고,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최하층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최하층으로 합니다. (최하층 우선 배정세대는 총 공급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입니다.)
-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라 하여도 타입별 세부면적과 해당 동, 라인, 층은 상이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시안내

|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 059.9570A | 059.9669B | 071.9950A | 071.9635B | 084.9495A |
|--------------|-----------|-----------|-----------|-----------|-----------|
| 약식표기 | 59A | 59B | 71A | 71B | 85A |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 01.11 | | | | | 분양가격 | | 계약금 | (10%) | TL 7(000() |
|----------|-----------|------------|-------------------|------------|-------------|-------------|------------|------------|-------------|
| 약식 표기 | 공급 세대수 | 구분 (층별) | 해당 세대수 | 대지비 | 건축비 | ا لا | 1차 | 2차 | 잔금(90%) |
| π/1 | | (62) | \ \frac{1}{2} 1 | 니시미 | 신국미 | 71 | 계약시 | 1개월 | 2024.12.31 |
| | | 5~9층 | 3 | 16,654,284 | 350,742,716 | 367,397,000 | 10,000,000 | 26,739,700 | 330,657,300 |
| 59A | 8 | 10~13층 | 3 | 16,654,284 | 356,707,716 | 373,362,000 | 10,000,000 | 27,336,200 | 336,025,800 |
|) 39A | 0 | 14~18층 | 1 | 16,654,284 | 362,672,716 | 379,327,000 | 10,000,000 | 27,932,700 | 341,394,300 |
| | | 19~23층 | 1 | 16,654,284 | 368,637,716 | 385,292,000 | 10,000,000 | 28,529,200 | 346,762,800 |
| | | 1~4층 | 1 | 16,657,031 | 322,107,969 | 338,765,000 | 10,000,000 | 23,876,500 | 304,888,500 |
| 59B | 3 | 5~9층 | 1 | 16,657,031 | 645,967,969 | 362,625,000 | 10,000,000 | 26,262,500 | 326,362,500 |
| | | 10~13층 | 1 | 16,657,031 | 359,090,969 | 375,748,000 | 10,000,000 | 27,574,800 | 338,173,200 |
| 71A | 2 | 14~18층 | 2 | 19,998,062 | 412,099,938 | 432,098,000 | 10,000,000 | 33,209,800 | 388,888,200 |
| 71B | 3 | 14~18층 | 1 | 19,989,312 | 413,208,688 | 433,198,000 | 10,000,000 | 33,319,800 | 389,878,200 |
| '15 | 3 | 19~23층 | 2 | 19,989,312 | 420,366,688 | 440,356,000 | 10,000,000 | 34,035,600 | 396,320,400 |
| 85A | 1 | 5~9층 | 1 | 25,447,822 | 464,100,178 | 489,548,000 | 10,000,000 | 38,954,800 | 440,593,200 |

※ 해당 동(라인)에 표기된 층구분은 동(라인)별 전체층을 표기한것으로, 해당층의 이해를 돕기 위한 표입니다. 동호수의 층별 세부 분양가격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동호별 분양가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주택전시관 및 카탈로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적합산 시 소수점 5자리에서 단수조정으로 계산한 값이 적용되어 소수점 4자리로 산정하였으며,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공통 유의사항

- 본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주택형별, 충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비용 통합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은 이전계약자의 유상옵션 설치 13세대 외 나머지 공급세대 4세대는 추가 선택품목 계약이 불가합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또한,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연체료가 발생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 구 | 분(약식표기) | 59A | 59B | 71A | 71B | 합 계 |
|--------------|----------------------|-----|-----|-----|-----|-----|
|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 국가 유공자 | 1 | - | - | - | 1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 1 | - | - | 1 | 2 |
| 디자네기구 국글증비 |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50%) | - | - | - | - | - |
| 신혼·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1 | - | 3 |
| 노부모 | <u></u> 부양 특별공급 | 1 | - | - | - | 1 |
| 생애: | 최초 특별공급 | - | 1 | - | 1 | 2 |
| | 합 계 | 4 | 2 | 1 | 2 | 9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특별공급

4

| 구분 | | | 내용 | | | | | | | | |
|------|---|---|--|--------------------------------------|--|--|--|--|--|--|--|
| . – | | | 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 | 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 | | | | | | |
| |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 | | | | | | | | |
| | |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 | | | | | | | |
| | | | .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 | | | | | | | |
| | 다만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 | | | | | | | | |
| | | 구분 | 처리빙 | t법 | | | | | | | |
| 공급기준 | 당첨자빌 | k표일이 다른 주택 | 당첨자발표일 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 | 첨자발표일 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 | | | | | | |
| |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전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 | | | | | | | |
| | Samener Ec 1 a |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 모두 부적 | 격 처리 | | | | | | | |
|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 | 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 '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 | | | | | |
| |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 | | | | | | | | | |
| | 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무주택 |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 | | | | | | | |
| 요건 | | | | | | | | | | | |
| | - 노부모부양: 무주택세대주 | 요건 | | | | | | | | | |
|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 | | | | | | | | |
| |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 | | | | | | |
|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 | | | | | | | | |
| |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형에 한함) | | | | | | | | | |
| | | | 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 | | | | | | |
| |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 | | 190 경기선의 지선병 명단병 생산기에 상대적 4 | A OLT | | | | | | | |
| 청약통장 | | | 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 | , , | | | | | | | |
| 자격요건 | | |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 건 1순위사(전용면식 85m 이야 수택영에 안암) | | | | | | | |
| | ③ 주택정약종압서국 : 주택 | | l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 | | | | | | |
| | |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토병나 및 과어나를 제어될 지어 | | | | | | | |
| | 구 분 전용면적 85㎡ 이렇 | 특별시 및 부산광약 화 300만원 | 부시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200만원 | | | | | | | |
| | 전용면적 85m 이약 전용면적 102m² 이 | | 250년년 400만원 | | | | | | | | |
| | 전용면적 135m² 이 | | 700만원 | 400만원 | | | | | | | |
|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세대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 추천기관 |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지방보훈청 복지과 |
| 당첨자 선정방법 |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4-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2세대

| 구분 | 내용 |
|--------|---|
|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 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 FUAFTL |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 대상자 |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 |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 |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제3항 |
| |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 당첨자 | ■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50%(인천광역시) → 기타지역 거주자 50%(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
|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제5조에 따라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
| | 50%는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거주 |
| | |

자 우선공급 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에서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와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해당지역 거주 신청자 우선공급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이혼,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 민 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 ②배점

| 배점항목 | ᄎᄈᅒ | 배점기준 | | 비고 | |
|-------------------|-----|------------------|-----|--|--|
| 메급성국 | 총배점 | 기준 | 점수 | 니프 | |
| 계 100 | | | | | |
| | | 4명 이상 | 40 | | |
| 미성년 자녀수(1) | 40 | 3명 | 35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
| | | 2명 | 25 | | |
| | | 3명 이상 | 15 | | |
| 영유아 자녀수(2) | 15 | 2명 | 10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
| | | 1명 | 5 | | |
| | | ᆲᆔᆔᇝ | 5 |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 |
| | 5 | 3세대 이상 |) 5 | 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
| 세대구성(3) | | 한부모 가족 | | - 청약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 |
| | | | 5 |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 |
| | | 10년 이상 | |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 |
| | | | 20 |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 |
| 무주택기간(4) | 20 | | |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 |
| | | 414 0141 514 515 | 10 |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
| | | 10년 이상 | 15 |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 · | |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 4- | - | 1.5 | 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
| | 15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경기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 |
| | | 4014 0111 |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 |
|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
| | | | | | |

※ (1), (2):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 4-3 | ᄾ |
|-------------|---|
| 구분 | |
| 대상자 | |
| 당첨자 선정방情 | |

| 구분 | | | 내용 | | |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 | | | |
| | | 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 | | | |
| | 단계 | 소득구분 | 내용 | | | |
| | 1단계 |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 | | | |
| | 2단계 | 신생아 일반공급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 | | |
| | 3단계 | 우선공급 (3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 | | |
| 당첨자 | 4단계 | 일반공급 (1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 | | |
| 선정방법 | 5단계 | 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 |
| | ※ 각 단계별 낙첨 | 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 | 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 | |
| | | = | 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해당지역 거주자 (인천광역시 거주자) 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 | |
| | ■ ②순위 | | | | | |
| | 순위 | | 내용 | | | |
| | 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 | | | |
| | 2순위 |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 | 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 | | |
| | | | 사지역 거주자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 | | |

■ 자녀기준

- 자녀는「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 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 입주자모집공고일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
|----------|------------------|-----------------------|
| 12.30.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소득구분 | | 비율 | 소득금액 | | | | | |
|----------|------------------------|------------------------|--------------|--------------|--------------|--------------|--------------|--------------|
| <u> </u> | 꼬득꾸군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신생아우선공급,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이하 | ~7,004,509원 | ~8,248,467원 | ~8,775,071원 | ~9,563,282원 | ~10,351,493원 | ~11,139,704원 |
| 우선공급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120% 이하 | ~8,405,411원 | ~9,898,160원 | ~10,530,085원 | ~11,475,938원 | ~12,421,792원 | ~13,367,645원 |
| | 부부 중 한 명만 | 100% 초과 | 7,004,510원~ | 8,248,468원~ | 8,775,072원~ | 9,563,283원~ | 10,351,494원~ | 11,139,705원~ |
| 신생아일반공급, | 소득이 있는 경우 | 140% 이하 | 9,806,313원 | 11,547,854원 | 12,285,099원 | 13,388,595원 | 14,492,090원 | 15,595,586원 |
| 일반공급 | 부부 모두 | 120% 초과 | 8,405,412원~ | 9,898,161원~ | 10,530,086원~ | 11,475,939원~ | 12,421,793원~ | 13,367,646원~ |
| | 소득이 있는 경우 | 160% 이하 | 11,207,214원 | 13,197,547원 | 14,040,114원 | 15,301,251원 | 16,562,389원 | 17,823,526원 |
| 추첨공급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9,806,314원~ | 11,547,855원~ | 12,285,100원~ | 13,388,596원~ | 14,492,091원~ | 15,595,587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1,207,215원~ | 13,197,548원~ | 14,040,115원~ | 15,301,252원~ | 16,562,390원~ | 17,823,527원~ |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비고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4-4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 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 구분 | 금액 | 내용 | | | |
|----------------|-----------------|------|---|---|---|
| | | | - 건축물가 시가표준 | 액 적용 | 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
| | | 건축물 | | 건축물 종류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 | | - 12 |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 | | | 十当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 | | | 주택 외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부동산 (건물+토지) | 3억3,100만원 이하 | 토지 | 단, 아래 * 「농지법 * 「농지법 * 「초지법 * 「초지법 * 하가증의 * 공부상 * 종중소역 제한을 | 경우는 제외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원 리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 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 | 용되고 있는 경우 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세대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 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해당지역 거주자 (인천광역시) → 기타지역 거주자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 ②가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 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 | | 만30세 미만 미혼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①무주택기간 | 32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 | 35 | 0명 | 5 | 4명 | 25 |
| ②부양가족수 | | 1명 | 10 | 5명 | 30 |
| @T0/17T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 | 3명 | 20 | | |
| |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③입주자저축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가입기간 | 17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기비기간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비고

당첨자 선정방법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4단계

5단계

(15%)

추첨공급

| 4-5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 |
| | ľ |
| | |
| | |
| | |
| | |

| 구분 | | | 내용 | |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어,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만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총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공제, 세액라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②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점 | | | | |
| | ■ ①소득구분 —————— | | | | |
| | 단계 | 소득구분 | 내용 | | |
| | 1단계 | 신생아 우선공급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 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 |
| 당첨자 | 2단계 | 신생아 일반공급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 | |
| 선정방법 | 3단계 | 우선공급 (3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 |
| | 4단계 | 일반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들이 저녁도 도시근로자 가구워수별 월평균소들이 130% 초과 160% 이하의 부 | |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인천광역시) → 기타지역 거주자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 입주자모집공고일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
|----------|------------------|-----------------------|
| 12.30.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소득구분 | | 비율 | 소득금액 | | | | | |
|------------------|-------------------------|------------------------|--------------|--------------|--------------|--------------|--------------|--------------|
| | エラナモ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 | 130% 이하 | ~9,105,862원 | ~10,723,007원 | ~11,407,592원 | ~12,432,267원 | ~13,456,941원 | ~14,481,615원 |
| | 신생아일반공급, | 130% 초과 | 9,105,863원~ | 10,723,008원~ | 11,407,593원~ | 12,432,268원~ | 13,456,942원~ | 14,481,616원~ |
| | 일반공급 | | 11,207,214원 | 13,197,547원 | 14,040,114원 | 15,301,251원 | 16,562,389원 | 17,823,526원 |
|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1,207,215원~ | 13,197,548원~ | 14,040,115원~ | 15,301,252원~ | 16,562,390원~ | 17,823,527원~ |
| 추첨공급 | 급 1인 가구 | 160% 이하 | ~11,207,214원 | ~13,197,547원 | ~14,040,114원 | ~15,301,251원 | ~16,562,389원 | ~17,823,526원 |
| |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1,207,215원~ | 13,197,548원~ | 14,040,115원~ | 15,301,252원~ | 16,562,390원~ | 17,823,527원~ |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비고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 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 구분 | 금액 | | 내용 | | |
|----------------|-----------------|-----|--|--|--|
| | | |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 |
| | | 건축물 |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 |
| | | | 주택 <u>(영화구역(이파트, 한법, 디세데)</u> 명하는 (영화구역(기역(기보교당수)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
| | | |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부동산 (건물+토지) | 3억3,100만원 이하 | 토지 |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 |

5

| | | | 내용 | |
|--------------|--|--|---|---|
| 대상자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 | ll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서 | 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i>,</i> 형제자매부양 <u>)</u> |
| 청약통장 자격요건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 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 : 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 [청약예금의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 | 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 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분 예치금액] 고 밖의 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 인 분(전용면적 85m ² 이하 주택형에 한함)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 |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인천광역시)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우선공급 → ③추첨) → 기타지역 거주자 (서울특별시 및 경 | | |
| | | 구분 | 가점제 | 추첨제 |
| 당첨자 선정방법 | | 100/ | 600/ | |
| 선정방법 | 전용면 | 적 60㎡ 이하(59A ,59B) | 40% | 60% |

| 가점항목 | 가점 | 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 | 32 | |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①무주택기간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 | 35 | | 0명 | 5 | 4명 | 25 |
| ②부양가족수 | | | 1명 | 10 | 5명 | 30 |
|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 | | 3명 | 20 | | |
| | |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③입주자저축 | | 본인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가입기간 | 17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시티시난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 | 배우자 |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 0 | 1년 이상 ~ 2년 미만 | 2 |
| | | 베구시 | 1년 미만 | 1 | 2년 이상 | 3 |
| | | 1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 | | |

-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 점수 |
|-----------------|-------------------------|----|
| 1년 미만 | 6개월 미만 | 1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
| 2년 이상 | 1년 이상 | 3점 |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 구 분 | H 8 |
|-------------------|---|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
|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3)본인단계등항시(단5)에 어진에 당한 경우 본인인고을 확합), (4)단물지두등본이 등재된 세대원을 이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이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 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 ③입주자저축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 가입기간 | *단,청약저축에서 총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일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주택소유여부 | 및 |
|--------|---|
| 무주택기간 | |
| 산정기준 |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단계 | 비율 | 내용 |
|-----|---------------|------------------------------|
| 1단계 | 추첨제 물량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
| 2단계 |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
| 3단계 |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단.청약저축에서 총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일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비고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6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 |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
|------------|---|---|
| 본인 신청 시 |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
| |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
|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
|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확인 방식 |
| |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 |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 제3자 대리신청 시 |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
| 추가서류 |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
| (배우자 포함) |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 |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 |
|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
| |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 | |
|---------------------------|--|--|--|
| 공고단지 청약연습 | | | |
| 당첨자발표 서비스 |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01.17.(금)~2025.01.26(일)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 | |

- 제공일시: 2025.01.17.(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당첨자는 공급유형 또는 당첨유형에 따라 아래 자격확인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인천광화서희스타힐스 홍보관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공통 유의사항

7

| 제출기한 | • 일시 : 2025.01.20(월)~2025.01.23(목) (4일간) / 10:00~16:00 • 대상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예비당첨자 |
|------|---|
| 제출장소 | • 분양사무실 (주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 176) |
| 유의사항 | ※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확인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여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는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 해야하며, 상기 서류제출 일정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단, 정당 당첨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 방문 및 계약체결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예약제'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홈페이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예비입주자 동호추첨 및 계약일정 등은 추후 홈페이지에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 계약체결 이전 사전 서류제출기간 내에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분리세대 등 확인)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당첨자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당첨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 청약자에 한하여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 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기간 내 제출)

| 구 분 | 서류유형 | 계 약 시 구 비 사 항 |
|-----|------|---------------|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 0 | (/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
| | | |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아파트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본인만 가능, 대리인 계약불가), |
| | | 0 | | 서명인증서 1통(외국인에 한합니다.) |
| | | | | ※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
| | | 0 | |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본인 서명) |
| | | |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 | | 0 | |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1부(또는 국내거주 사실증명서1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 |
| | | 0 | | 주민등록표등본 1통[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및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함] |
| | | 0 | | 주민등록초본[전입발생일,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 | 7 = | 0 | | 출입국사실증명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
| | 공통 | 0 | | 가족관계증명서 1통(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0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 한함) |
| 본인 | | | 0 | 배우자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계약시 | | | 0 |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만18세 이상인 자녀의 부양가족 수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0 | 직계 존·비속의 주민등록초본 각 1통(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단, 직계비속은 만 30세 이상인자에 한함) |
| | | | 0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부,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1부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6개월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
| | | | 0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1부) |
| | | | 0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 | | 0 | 직계 존·비속의 출입국사실증명원 1부 (피부양 직계 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
| | 부적격 통보를 | | 0 |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 받은 자 | | 0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 | (해당주택에 대한 | | 0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건축물관리대장등본과 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
| | 소명자료) | | 0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ᅰᇬ | |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아파트계약 위임용 1통, ※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합니다.) |
| | 자 대리계약시 | 0 | | - 계약자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 |
| | 추가사항 | | |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양식은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 | | |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이내에 가전제르 전요바이 다른 즈태이 다쳐자가 된 자이 세대에 소하 자느 제1수의에서 가전제이 전요 대사자에서 제이되며 츠쳐제이 전요 대사자에 포하되다. |

-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 재외동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
- ※ 특별공급 당첨자의 경우 특별공급 구비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모든 증명서류(계약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할 경우, 계약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시 외국인의 구비사항은 공급신청시 구비사항과 동일함)
-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 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 택에 방문하시어 계약 시 아래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시고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 2005. 06. 28.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추후, 계약 시 계약구비서류 변경 또는 추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체결 시 대리인 방문이 불가하며 본인이 방문하여야 합니다.
-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해외체류로 봄)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3 개월 미만의 단순 단기여행, 출장, 파견 등은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거주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서류만 인정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계약 체결 전 제출)

| | 서 | 류유형 | | | |
|----------------------|----|-------------|-----------------------------|--------------|--|
| 구분 | 필수 | 추가 (해당자)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0 | | 신분증 |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 | 0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인터넷 청약 신청한 당첨자는 계약 시 제출 견본주택 청약신청자(정보취약계층)는 청약접수 시 제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제출 시 3자 대리신청 및 대리계약 불가 |
| | 0 | | 인감도장 | 본인 | 인터넷 청약 신청한 당첨자는 계약 시 지참 필수 견본주택 청약신청자(정보취약계층)는 청약접수 및 계약 시 지참 필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제출 시 생략 |
| | 0 |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 | 0 | | 주민 등록 표초본 |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공통 | 0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관계 확인,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성류 | 0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0 | | 출입국사실증명서 |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 발급기간 :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발급(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 |
| | | 0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 (가입)확인서 발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 | 0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하단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 | 0 |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증빙서류 |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7항에 의거 당첨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 참조] |
| | | 0 | 복무확인서 |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 (10년 이상) 명시 |
|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 0 |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 본인 |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만 인정함(장애인 복지카드 등 기타 서류로 접수 불가) 국가유공자는 보 훈청 관리명단으로 접수함 |
| | | 0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0 | 출입국사실증명서 |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해당 직계존속 제출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
| 다자녀 | | 0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 특별공급 | | 0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 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재혼이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 | 0 | 안은명사류 또는 출신 증 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시실 확인 기능해야 함) |
| | | 0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 본인 또는 | 입양의 경우 |

| | 서류유형 | | | | | |
|---------------|------|-------------|--------------------------|--------------------------|---|--|
| 구분 | 필수 | 추가 (해당자)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배우자 | | |
| | | 0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견본주택에 비치 | |
| | 0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0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
| | 0 | | 소득증빙서류 | 세대원 전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 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 참조 | |
| | | 0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본인의 친자녀가 아닌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
| 신혼부부 | | 0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압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산시실 확인이 기능해야 함 | |
| 특별공급 | | 0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 |
| | | 0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
| | | 0 | 비사업자 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비사업자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 |
| | | 0 | 부동산소유현황 | 본인 및 세대원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
| | 0 |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본인 | · 견본주택 비치 | |
| | 0 | |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 직계존속 |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0 | | 출입국사실증명원 | 피부양 직계존속 | ·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고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기족에서 제외에 해당하므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불가 ※ 기록 대조일을 해당자의 생년월일~현재로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 | | 0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직계비속 | · 만 30일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0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비속 | ·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이 부양가족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
| | | 0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 0 | 출입국사실증명원 | 피부양 직계비속 | ※ 기록 대조일을 해당자의 생년월일~현재로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만 30세 이상 미혼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

| | 서류 | 류유형 | | | | |
|---------------------------|----|-------------|-------------|----------------------|---|--|
| 구분 | 필수 | 추가 (해당자)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0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상세'로 발급) | |
| | 0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당첨자(청약신청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 포함)인 세대원 전원 제출 (발급차:국민건강보험공단 T. 1577-1000)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필수 | |
| | 0 | | 소득증빙서류 |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당첨자(청약신청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 포함)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당첨자(청약자)의 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생애 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참조)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필수 | |
| | | 0 | 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
| 생애최초 특별 공 급 | | 0 |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직계존속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7208 | | 0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소득산정 시 당첨자(청약신청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 | 0 | 주민등록표초본 | 배우자 |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 | |
| | | 0 | 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
| | | 0 | 비사업자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견본주택 비치) | |
| | | 0 | 부동산소유현황 | 본인 및 세대원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
| | 0 | | 인감증명서 |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
| 제3자 | 0 | | 인감도장 | 청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
| 대리인 | 0 | | 위임장 |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
| 신청시 추가사항 | 0 | | 주민등록증 |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 | Ο | | 인장 | 대리인 | | |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 받지 않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할 경우, 계약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계약시 외국인의 구비서류는 공급신청시 구비서류와 동일함)
- ※ 계약체결 이전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고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여부,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 자격검증을 위해 상기서류 외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잘못 접수된 신청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 기 바랍니다.
- ※ 2019.08.1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 기준 6개월 내 기간 중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 청약신청자는 사업주체에 정식 발령공문 등에 의한

해외체류인지 단순 해외여행인지 여부에 대해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발급하는 서류만 인정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계약 체결 전 제출)

| 서류 구분 | 해당자격 | 납부 입증 제출 서류 | 발급처 |
|---------------|---|--|----------------------------------|
| | 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자격 입증서류 | 자영업자 | ※ 간이 과세자 중 소득금액 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납입용 가입내역 | ① 해당직장 취② 세무서 ③ 국민건강보험(공단) |
|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 자영업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 |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납세사실증명(종합소득금액 증명 제출자에 한함)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④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계약 체결 전 제출)

| | 해당자격 | 소득세 입증 제출 서류 | 발급처 |
|------|---|---|--------------------------|
| | 일반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 |
| 근로자 |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 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①, ②, ③ 해당직장 ④ 국민연금공단 |
| | 전년도 전직 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원본, 직인날인) | ①, ② 해당 직장 |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 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 ① 해당 직장 |
| 자영업자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 ①, ② 세무서 |

|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 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납입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본) | ① 국민연금공단, 세무서 |
|-------------------------------|---|----------------------|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및 연금정산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
| 법인사업자 | ① 법인등기부등본(사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 ①, ② 세무서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원본) ②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③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및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①, ② 세무서 ③ 해당 직장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① 주민센터 |
|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 근로자 |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월별급여명세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①번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① 해당 직장, 국민연금관리공단 |
| 무직자 |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 (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견본주택 |

-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름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계약 체결 전 제출)

| | | 서류 | 유형 | | 발급기 준 | | | |
|---|----------|----|-------------|-----------------------|----------|--|--|--|
| 구 | 분 | 필수 | 추가 (해당자) | 서류 | |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 | |
| | | 0 | | 서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일부 생략] | | |
| | | 0 | | 신분증 |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 |
| | | 0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인터넷 청약 신청한 당첨자는 계약 시 제출 견본주택 청약신청자(정보취약계층)는 청약접수 시 제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3자 대리신청 및 대리계약 불가 | | |
| | | 0 | | 인감도장 | 본인 | 인터넷 청약 신청한 당첨자는 계약 시 지참 필수 견본주택 청약신청자(정보취약계층)는 청약접수 및 계약 시 지참 필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 | |
| - | 7 = | 0 |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 |
| 7 | 공통 서류 | 0 |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 | 0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관계 확인,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 | 0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 | 0 | | 출입국사실증명서 |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 발급기간 :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발급(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 | | |
| | | | 0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하단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
| | | | 0 |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증빙서류 |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7항에 의거 당첨자(청약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아래'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참조] | | |
| | | | 0 | 복무확인서 |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 | |
| | | | | | | | | |

| | | | | |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 명시 |
|-----------------------------|---|---|-----------------------|-----------------|--|
| | | 0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 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주민등록표등본 상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 체포함'으로 발급 |
| | | 0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비 속 | 만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주민등록표등본 상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부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 체포함'으로 발급 |
| 가점제 | | 0 | 혼인관계증명서 | 피부양 직계비 속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 | 0 | 출입국사실증명서 | 피부양 직계존 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 | | 0 | 출입국사실증명서 | 피부양 직계비 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 | | 0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 배우자 |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 | | 0 | 당첨사실 확인서 | 배우자 |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 0 | 무주택 소명서류 | 해당주 택 |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에 따른 해당 서류제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 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주택소유에 관한 증명서류 |
| (소명자료) | | 0 | 당첨사실 소명서류 | 본인 |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당첨사실무효확인서,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서류 등) |
| 제3자 대리인 계약 시 (본인 외 모두 | 0 | | 위임장 | | • 견본주택 비치(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 | 0 | | 계약자 인감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 |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대리 계약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 (논한 최 포구 제3자로 간주) | 0 | | 대리인 신분증 |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 - 13·1 <u>-</u> E1/ | 0 | | 대리인 도장 | | |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에 대한 소명자료는 접수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며,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합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계약체결 이전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고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여부,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 2019.08.1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 기준 6개월 내 기간 중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 청약신청자는 사업주체에 정식 발령공문 등에 의한 해외체류인지 단순 해외여행인지 여부에 대해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거주지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발급하는 서류만 인정합니다.

■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 (※계약 체결 전 제출, '단신부임' 청약신청 및 당첨자는 상기 공통서류 외 추가 제출)

| 구분 | 서류유형 필수 추가 (해당자)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확인 및 유의사항 |
|----------------|------------------------|-----------|------|--|
| 해외근무기 (단신부임 | ł o | 해외체류 증빙서류 |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 |

| | | | | 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 정 |
|---|---|-----------------------|-------------|--|
| 0 | | 출입국사실증명서 | 본인 및 세대원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
| | 0 | 비자 발급 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비자 발급 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단신 부임 인정 불가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8

| 구 분 | 계약 기간 | 계약 장소 |
|------|---|-------------------------|
| 특별공급 | 0111 2025 04 24/ TV 2025 02 04/\$TV (20171 40.00 47.00) | • 분양홍보관1층 |
| 일반공급 | 일시 :2025.01.31(금)~2025.02.04(화) (3일간 10:00~17:00)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 176) |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1차 계약금 납부 및 계약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 | 서류유형 | | | | | |
|-------------------|------|---------|-------------|--------------------------------|---|--|
| 구 분 | ш. | 추가 | 서류 | 발급기준 |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해당자) | | | | |
| | 0 |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 본인 |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현장수납 불가 | |
| | 0 |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 |
| | | | 인감증명서 또는 | |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용)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 | 0 | | | 본인 | ※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인 절대 불가함 | |
| |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 본인계약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
| | 0 | | 인감도장 | 본인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 |
| 7.5 | 0 |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 본인 |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 공통 | | | 자격확인서류 일체 | | | |
| 서류 | | | | |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증명서류 | |
| | | 0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 본인 | - 일반 주택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 |
| | | | 요구하는 서류 | | - 무허가 주택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 |
| | | | | |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
| | | | | |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 |
| | | 0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 |
| | | | | |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대리인 계약시 (본인 외) | 0 | | 위임장 | - |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 |
| | 0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청약자 | •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 | |
| | | | 시비즈 이자 | רוושוסו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 |
| | 0 | 신분증, 인장 | 대리인 |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등

- 계약금납부 방법 : 지정계좌 무통장 입금(현장수납 불가)
 - 지정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는 당첨 효력이 상실됩니다.(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 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을 제한함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4항
-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본인의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시 이를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수 및 미계약 동·호수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수 및 미계약 동·호수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앞선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정당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정당 당첨 건은 무효 처리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 ①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합니다.
- ②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 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합니다.
- 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 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④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함.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 시 체결된 건물의 공급면적 및 대지 공유지분은 공부정리 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는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경우에 계약서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인한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음.
- 주변단지의 신축이나 증, 개축 또는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소음·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생활환경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및 동·호수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므로, 계약자는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해야 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함.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음.(단, 부적격당첨자(예비입주자포함)로 판명된 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가산세) 및 제세공과금 등은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함.
- 부동산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인지(기재금액 1억원 이상~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를 계약서 작성시점에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 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함.
-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하는 마감재 선택사항 및 플러스옵션계약은 변경이 불가하며,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해제가 불가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람.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 분양계약서 및 계약구비서류를 준용.
- 사업주체가 마감자재업체의 선정 및 시공 상의 고려 등의 사유로 계약자가 계약 시 선택한 마감자재의 선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이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이 경우 통지의 방법 및 효과 등은 분양계약서를 준용합니다. 이 때, 계약자가 사업주체의 위 통지를 수령하거나 또는 수령 간주된 후 2주내에 사업주체에 대하여 서면으로써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마감자재 등 선택사항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함.

■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납부 안내

- 본 공급계약, 발코니확장 계약, 추가선택품목 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를 분실했을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 및「인지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며 각각 계약서를 작성할 때 마다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계약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법」제5조에 따라 동일한 계약당사자가 하나의 인지세 과세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인지세 과세문서로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계약서 기재금액의 총 합계액에 해당하는 인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 부동산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분양대금 미납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법」제1조.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 인지세 납부 안내 | | | | |
|-----------|--|--|--|--|
| 대상 증서 | 부동산 분양계약서 및 전매계약서, 추가선택품목 계약서 | | | |
| 납부 기한 |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전매] 명의변경 승인일 | | | |
| 납부 방법 |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접속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및 결재 → 전자수입인지 출력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 | | |
| | - 우체국 및 은행에 방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 | | |

- ※ 2022.12.31.「인지세법」제8조 일부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 2022.12.31. 「국세기본법」제47조의4조제9항 일부개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농협은행 | 301-0290-7214-51 | ㈜무궁화신탁 |

- 상기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선택품목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에 상기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지 않은 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간주되며,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을 지정된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101동 1501호 홍길동 : 1011501홍길동 / 106동 501호 홍길동 : 1060501홍길동)
-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 대출 안내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또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를 반드시 미리 확인하기 바람)
- 금융관련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향후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중도금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공급대금의 60% 이내에서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중도금대출을 알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금 6회차 중 1~6회차는 중도금 대출금으로 납부되고, 계약금 및 잔금은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 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은행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납부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 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며,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입주지정기간 이전에 대신 납부했던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입주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계약자 본인이 직접 대출취급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 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 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은행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은행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에 따릅니다.
- 연체 안내

9

- 잔금을 납부기간 이후 납부할 경우에는 연체일수만큼의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적용됨

참고사항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 | |
|---|--|--|--|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 |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 |
| 주택처분 기준일 |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 |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 |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9. 주택공급신청자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주택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들: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일 것
 - 1)「주택법 시행령」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2)「주택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3)「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조항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이 유형 | 주거전용면적 | 수도권 | 비수도권 |
|-----------|------------------|---------|---------|------|
| 제53조제9호가목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 60m² 이하 | 1억 6천만원 | 1억원 |
| | 단독주택 | | | |
| 제53조제9호나목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85m² 이하 | 5억원 | 3억원 |
| | 도시형 생활주택 | | | |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10 발코니 확장공사 및 추가선택 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원, 부가가치세 포함)

| | | 계약시(10%) | 잔금(90%) |
|----------|------------|-----------|---------------------|
| 주택형(타입) | 공급금액 | 계약시 | 입주지정기간의 종료일 또는 |
| | | 게ㅋ시 | 세대 출입 열쇠 수령일 중 선도래일 |
| 59A, 59B | 9,900,000 | 990,000 | 8,910,000 |
| 71A | 13,200,000 | 1,320,000 | 11,880,000 |
| 71B | 12,100,000 | 1,210,000 | 10,890,000 |
| 85A | 15,400,000 | 1,540,000 | 13,860,000 |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농협은행 | 301-0290-7214-51 | ㈜무궁화신탁 |

- 상기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및 추가 선택품목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증은 납부 영수증으로 간주되며,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대금을 지정된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101동 1501호 홍길동 : 1011501홍길동 / 106동 501호 홍길동 : 1060501홍길동)
-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본 아파트 금회 일반분양은 기존 조합원의 탈퇴 등에 따른 추가 입주자모집으로 기존 조합원이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여 계약체결된 건에 대한 재모집으로 금회 본 아파트를 계약하시는 분은 반드시 발코 니확장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추가 입주자모집 전세대 발코니 확장을 선택한 세대이며, 발코니 비확장으로 변경은 불가능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계약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함.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 되었을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홍보물 및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으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 현상

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함(겨울철 실내 습도가 높고 환기가 부족한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되기 쉬우며, 주기적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단위 세대의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발코니 확장형을 중심으로 설계하였음
- 발코니 확장형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가 시공 되지 않음.
- 발코니 외벽은 시공시 외관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되어 있을 수 있음.
- 일부 세대는 발코니 내 선홈통, 배수관이 일부 노출되어 미관상 저해요소가 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형의 발코니 확장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 새시 설치 기준은 사전에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면적은 발코니면적 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므로, 실사용 면적과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하며 계약자의 개별시공은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 후 가능함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동일평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깊이 및 천장고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허용오차 내)
-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기준 「건축법시행령」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천정형 에어컨, 주방 가전제품(비스포크), 엔지니어드스톤, 현관 중문

- 본 아파트는 2021년 09월 14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2022년 10월 28일 2차 입주자모집공고로 일반분양을 진행하였으며, 금번 일반분양은 일부 조합원 탈퇴 등에 따른 추가 입주자모집으로 현재 준공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 총 공급세대수 17세대 중 13세대는 이전 계약자의 유상옵션 계약으로 인하여 일부 유상옵션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유상옵션이 설치된 상태로 공급받아야 하며, 유상옵션 대금은 분양대금과 별도로 납부하 여야 합니다. 해당세대 계약자는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이전 계약자의 유상옵션 설치 13세대 외 나머지 공급세대 4세대는 유상옵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유상옵션 설치세대 및 설치품목

| | | | 유상옵션 설치품목 | | | | | | | | | | | | | | |
|----|----------|-----|------------|-----------|---------------|-----------|-----------|-------------|------------|------------|------------|-----------|-----------|-----------|-----------|-------------|------------|
| No | 동호수 | 타입 | 시스템 에어컨 | 냉장고 | 새집증후군 예방도료 | 방범 방충망 | 단열 필름 | 엔지니어드 스톤 | 발코니 페인트 | 욕실 나노케어 | 창호 나노케어 | 하이 글라스 | 현관 중문 | 줄눈 시공 | 전기 레인지 | 지문인식 도어락 | 계 |
| 1 | 103-1302 | 59A | 5,040,00 | | | 1,760,000 | | 2,430,000 | 830,000 | | | | 1,550,000 | 1,760,000 | | 370,000 | 13,740,000 |
| 2 | 106-1504 | 59A | | | | | | | 옵션기 | 계약 X | | | | | | | - |
| 3 | 109-601 | 59A | 4,600,000 | 5,200,000 | 2,500,000 | 1,700,000 | 1,700,000 | 2,350,000 | | 2,200,000 | 2,150,000 | 800,000 | 2,400,000 | 700,000 | 660,000 | 350,000 | 27,310,000 |
| 4 | 109-1002 | 59A | | | | | | | 옵션기 | 계약 X | | | | | | | - |
| 5 | 110-601 | 59A | 3,400,000 | | 2,500,000 | 1,700,000 | 1,700,000 | 2,350,000 | | 2,200,000 | | 800,000 | 1,500,000 | 1,730,000 | 660,000 | | 18,540,000 |
| 6 | 110-1301 | 59A | 6,000,000 | | | | | | | | | 800,000 | 1,500,000 | | | | 8,300,000 |
| 7 | 110-2104 | 59A | | | | | | | | | | | 1,300,000 | | | | 1,300,000 |
| 8 | 118-802 | 59A | 4,600,000 | | | | | | | | | | | | 660,000 | | 5,260,000 |
| 9 | 109-203 | 59B | 6,000,000 | | | 1,750,000 | | 2,400,000 | | 2,200,000 | | 800,000 | 1,300,000 | 700,000 | 660,000 | | 15,810,000 |
| 10 | 109-503 | 59B | 3,400,000 | | | | | | | | | | | 700,000 | | | 4,100,000 |
| 11 | 109-1003 | 59B | 6,000,000 | | | 1,750,000 | | | | | | 800,000 | | | 660,000 | | 9,210,000 |
| 12 | 101-1501 | 71A | 6,100,000 | | | | | | | | | | | | | | 6,100,000 |
| 13 | 102-1503 | 71A | 4,700,000 | | | | | | | | | | 1,300,000 | | | | 6,000,000 |
| 14 | 102-1602 | 71B | 옵션계약 X - | | | | | - | | | | | | | | | |
| 15 | 108-1903 | 71B | 옵션계약 X - | | | | | - | | | | | | | | | |
| 16 | 115-2202 | 71B | 6,580,000 | | | | 1,960,000 | 2,630,000 | | | | | 1,500,000 | 1,760,000 | 640,000 | | 15,070,000 |
| 17 | 101-503 | 85A | 3,600,000 | | | | | | | | | | | | 640,000 | | 4,240,000 |

11 유의사항 및 단지 내외부 여건

■ 일반 공통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 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시,「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2009.04.01「주택공급에관한규칙」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니다.
- 2007.07월부터 법정계량단위 사용의무화 조치(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가 시행됨에 따라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5자리에서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함)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펌프실/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아파트 대지면적(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제외)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지지분의 변동에 대해서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1% 이내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통합취득세가 미포함된 가격입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음. 다만, 동별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당 아파트의 도면은 분양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단위세대 Type일지라도 주거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의 차이로 인해 공급면적과 계약면적이 상이하니,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동일한 TYPE의 단위세대도 발코니 세대간 조건에 따라 서비스 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외벽 및 창호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외벽에 부착되는 장식물, 조명,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 분양 홍보에 사용된 공급 안내문, 단지 및 세대 모형, 카탈로그 및 각종 인쇄물, 기타 홍보물에 삽입된 CG,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평면도(치수, 구획선), 면적 및 도면내용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 홍보물에 표현된 주변토지 및 건물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확인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등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조망권 침해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타사 또는 당사 분양 아파트의 마감사항, 부대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샘플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 시설, 조경 식재, 시설의 설치 또 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됩니다.
- 단지 내 시설물 명칭 등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전기&통신시설물(공용조명포함), 놀이터, 휴게공간, 운동시설, 포장시설, 수목관리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초과 발코니 면적은「공동주택의 발코니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침(2006.01.23)」에 의거하여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입하였습니다.
- 준공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의함
- 각종 환기구(D/A 등)는 환기장치 작동시 기류 및 장비소음 및 배기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시 시설물 배치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분양홍보물 관련 유의사항

- 홍보용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문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람.
-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 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홍보물[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실제 시공과 다를 수 있음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 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 조경,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 다를 수 있음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평면도, 조감도, 배치도, 이미지 컷,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조감도 및 배치도, 인근의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람.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단지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각종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공간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공원, 녹지 등) 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에 제작된 사전 홍보자료는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 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계약 전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어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기 바 람.
-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 가능 하오니,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해야 함.

■ 설계 및 시공에 관련된 유의사항

"을"은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에 동의한다.

- (1) 계약 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2) 주택법시행규칙 13조 5항 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3)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 공유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4) 광역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음.
- (5) 단지 외 설치되는 도로, 보행자도로, 공공공지, 근린공원, 하천(창곡천), 주차장용지(B1블록) 등의 개설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빛, 소음, 분진, 악취, 벌래 기타 외부인 통행 등에 대하여 입주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6) 본 사업부지 외 인근의 도로, 보행자도로, 공공공지, 근린공원, 하천(창곡천), 주차장용지(B1블록) 등은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및 용도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음.
- (7) 사업계획승인 당시 계획된 소음치가 주변 지역여건의 변화로 건물 완공 후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차량증가로 인한 입주 소음에 대하여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8) 카다로그, CG 등에 표시한 단지 외부의 도로, 보행자도로, 공공공지, 근린공원, 하천(창곡천), 주차장용지(B1블록)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 (9) 본 아파트 입주시점에 학교배정 등 교육정책은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의 정책에 따름 (학교 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체와 시공사에 일체의 책임이 없음), 통학거리와 관련하여서는 청약,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 인천광역시교육청 : 학교용지부담금 범위 내에서 '선원초등학교'의 일반교실 및 특별교실 층축비 부담 및 학생통학 편의를 위한 통학버스 운영을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조건으로 초등학생 배치 가능
- (10) 대지 경계명시측량 및 확정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단지배치, 단지 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공급면적 등이 계약체결 이후 입주시 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11) 입면차별화 및 기능개선 등에 따른 사업승인변경 등으로 인하여 옥탑, 지붕,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 등의 디자인의 변경과 일부 동의 세 대 발코니에 장식 등 이 부착될 수 있음(입면특화 등을 위한 외부몰딩을 설치할 경우 일부 세대는 높은 턱이 생길 수 있음.)
- (12) 단지명칭 및 동번호,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색채심의 등을 포함)결과로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3) 단지 내 조경, 어린이놀이터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관계기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되었음.

- (14)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접근 거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15)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 설비 시설물의 위치 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16)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 질 수 있음
- (17) 공용부분의 시설물(주민공동시설,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조합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8)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안목치수가 도면과 다를 수 있음.
- (19) 일부 세대는 선홈통 배수관이 일부 노출되어 미관상 저해요소가 될 수 있음.
- (20) 전후면 발코니 창호의 형태, 재질, 크기 및 콘크리트 난간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21)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설치유무, 형태 및 사양은 동별, 층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22) 단지 배치상 동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조망,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세대는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23) 단지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자전거 보관소, 근린생활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등의 침해와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
- (24)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침해 및 일조량 감소가 될 수 있음.
- (25) 단지 내 옥외 계단과 지하시설물의 환기, 채광, 제연을 위한 시설 (탑라이트, D/A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 단지 배치상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주차장 급배기시설 및 분리수거함 등의 위치에 따라 저 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의 침해와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상세한 위치 등은 계약 전 분양사무실에 비치된 도면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람.
- (26)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마루자재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재료 고유의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시 변형, 비틀림 등 우려가 있음.
- (27 현관디딤판, 화장대 상판, 욕실 전대 등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으며, 추후 사용시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음.
- (28) 세대내부 가구 및 거울설치 부위의 비노출면 (바닥, 벽, 천장등)은 별도마감 없음.
- (29)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음.
- (30) 계약자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에 의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하기 바람.
- (31)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32) 일부 세대의 경우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계약 전에 도면 및 홍보자료 등을 확인하기 바라며, 현관 전면에 계단실은 동·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음.
- (33)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 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34) 단지 경계부는 단지 외 도로 및 인접지 와 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 내 바닥포장, 지상, 지하 동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료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사항은 입 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35) 단지내·외 레벨차에 의한 구간은 세대별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36) 화장실 천장에는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에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 될 수 있음.
- (37) 세대온수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등이 세대 주방가구 싱크볼 하부, 파우더룸 하부, 신발장 내부 또는 배면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가구내부 실사용 면적이 축소될 수 있음.
- (38) 세대 분전함, 세대 통신함은 침실, 주방, 팬트리 등의 벽체에 노출하여 시공되므로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람.
- (39)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월패드 및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람.
- (40)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함.
- (41) 현관신발장, 주방가구, 일부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42) 필로티 층에 인접한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세대는 바닥 난방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음.
- (43) 각 동에 인접한 부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휴게시설, 옥외시설물, 주차장진출입구, 문주, 경비실, 옥외 계단, 지상주차 등의 이용에 따른 소음 및 차량불빛 등의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될수 있음.
- (44) 엘리베이터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진동이 발생될 수 있고, 저층세대는 근린생활 시설과 부대복리시설에 의해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45) 승강기, 각종 기계, 환기, 공조, 전기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전 확인하시기 바람.
- (46)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47)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48) 생활환경 (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49)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패널, 옥상고가수조, 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50) 일부 세대는 옥외 보안등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옥외보안 등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름.
- (51) 본 아파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52)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 (인테리어, 가전제품, 부동산중개 등)는 본 사업과 무관하므로 특히 계약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람.
- (53) 분양사무실 내부에 설치된 환기설비(환기캡 등)는 분양홍보관 환기를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시 설치되지 않음
- (54) 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창호 일부에 설치되는 자연형 환기 방식으로 시공됨 (별도의 기계식 환기 설비 미시공)
- (55) 세대의 경우 서비스면적 확보 및 발코니 확장을 고려한 평면 설계로 시공 되었음.
- (56) 단지 내 각동 인근 재활용분리수거장, 재활용 보관창고, 자전거보관소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57) 아파트외관 및 옥상에 경관조명이 설치될 경우 야간에 빛에 의한 환경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58) 대피공간 출입문은 방화문이 설치되며, 입주 후에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재질을 변경할 수 없으며, 대피공간의 방화문 설치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1~3층 창고 (대피공간 제외) 이며, SD도어 적용)
- (59)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지상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실외기 소음 등), 조망권 및 일조권 침해, 자동차 전조등 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60)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의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음. 또한, 욕실 출입시 신발 종류에 따라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음.
- (61)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음.
- (62)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세대가 속한 동 및 라인에 따라 세대입구 공용부분 등이 상이하오니,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람.
- (63) 발코니 확장 부위는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 추위를 느낄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기적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64)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한 면적 및 마감형태(돌출/변형) 등이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격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함.
- (65) 필로티, 보행자, 비상차량 동선 등으로부터 소음 및 시각적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66) 동 지하에 제연휀룸 및 점검실(통신)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67) 동에 인접하여 D.A 설치에 의한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와 시각적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68) 홈페이지, 카다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 컷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69) 해당 주택의 입주 후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는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주차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되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함
- (70) 조합원 공급계약서 기재 사항에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함.
- (71) 세대내 일부 도어가 손잡이로 인해 90도 개방이 어려울 수 있음.
- (72) 단지 북측에 묘지 등 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73) 본 공고문에 명기되거나 명기되지 않은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74) 단지 남측에 중앙로(4차로), 단지 북측에 근린공원, 단지 북동측에 주차장용지, 단지 동측 신정리입구 교차로에 인접하여 주유소, 자동자정비소, 종교시설(교회)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외 중앙로(4차로)상에 위치한 기존 건축물로 인해 및 소음, 및 분진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75) 주거 공용 부분인 전실 및 홀 등은 입주자 전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음
- (76) 주동 저층부 및 필로티 내에 자전거 보관소 및 제연 설비를 위한 DA가 설치되어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77) 1-1단지와 1-2단지 사이에 하천(창곡천)과 보행교 및 보행자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및 분진, 악취, 벌래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78) 주동 옥상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며 각 주동별로 설치규모가 상이아니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79) 주동 106동, 115동 옥상에 고가수조가 설치되어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80) 단지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81) 단지내 레벨차가 발생하며, 그로 인해 조망,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82) 단지내 지하 정화조가 설치되며, 악취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83) 동일 유형의 단위세대 중, 측세대와 중간세대는 주동의 평면 조합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 의 길이' 혹은 '창호의 위치' 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84) 지하주차장 트렌치 시공시 시공부위의 주차구획은 트렌치폭을 포함하며, 트렌치가 배면, 측면에 시공될시에는 주차라인 마킹 표기가 제외됨
- (85) 지하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 높이는 2.3m이상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5호에 적합하게 설치됨.
- (86) 동별 설계상 주요 유의사항

구분 공기내용

| 101동 | 주동 동측에 단지 출입 보행로가 위치하고 있어, 빛, 조망,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북측 및 북서측에 지상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어, 빛, 조망,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남동측에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조망,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남측에 주민운동시설, 어린이 놀이터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북측 및 북서측에 인접대지와의 레벨 극복을 위한 옹벽이 위치(거리 약5m)하고 있어, 조망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지하층에 정화조, 저수조, 발전기실, 전기실, 펌프실, 우수저류조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 악취 등의 환경 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외 동측에 20m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외 북측에 15m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102동 | 주동 북측 및 북동측에 지상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어, 빛, 조망,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북서측, 서측, 남서측에 단지 출입구, 문주, 경비실, 지하주차장 램프, 근린생활시설, 지상주차장, 키즈&맘스테이션, 차량 회차공간이 위치하고 있어, 조망, 빛,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동측 및 남동측에 주민운동시설,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조망,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북측에 인접대지와의 레벨 극복을 위한 옹벽이 위치(거리 약17m)하고 있어, 조망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지하층에 정화조, 저수조, 발전기실, 전기실, 펌프실, 지하주차장 램프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 악취 등의 환경 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외 북측에 15m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103동 | 주동 북측 및 북동측에 주민운동시설, 어린이 놀이터가 위치하고 있어, 조망,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북동측에 인접하여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조망,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북측 및 서측에 키즈&맘스테이션, 차량 회차공간, 지상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어, 조망, 빛,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남서측에 지상주차장, 남동측에 인접하여 지하(지반 내)에 근린생활시설용 정화조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악취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남서, 남, 남동측에 인접대지와의 레벨 극복을 위한 옹벽이 위치(거리 약12m)하고 있어, 조망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외 남서, 남, 남동측에 하천(창곡천), 보행교, 보행자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분진, 악취, 벌래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104동 | 주동 동측에 지상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북측에 지상주차장, 차량 회차공간, 키즈&맘스테이션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서측에 중앙광장, 휴게쉼터, 남서측에 주민운동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저층부에 어린이집 및 유아놀이터, 재활용보관창고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남측, 남동측에 인접대지와의 레벨 극복을 위한 옹벽이 위치(거리 약11m)하고 있어, 조망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지하층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등의 환경 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외 남서, 남, 남동측에 하천(창곡천), 보행교, 보행자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분진, 악취, 벌래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105동 | 주동 북측에 근린생활시설, 북동측 및 동측에 경비실, 단지출입구, 문주, 지하주차장램프, 차량회차공간, 키즈&맘스테이션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남동측에 지상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남서측에 중앙광장, 휴게쉼터, 남측에 재활용보관창고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북서측에 공공보행출입구, 통학차량승하차장, 서측에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저층부에 전동휠체어 충전소,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북측에 인접하여 지하(지반 내)에 근린생활시설용 정화조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 악취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지하층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외 북측에 15m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106동 | • 주동 북측에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 서측, 북서측에 단지 출입구, 문주, 경비실, 차량회차공간, 지상주차장, 지하주차램프, 키즈스테이션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 북동측에 공공보행출입구, 통학차량승하차장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주동 남동측에 옥외계단, 중앙광장, 휴게쉼터, 재활용보관창고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남서측 및 남측에 어린이 놀이터, 휴게정원, 경로당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북측에 인접하여 지하(지반 내)에 근린생활시설용 정화조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 악취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저층부에 관리사무소, 경비원 휴게소, 근린생활시설, 전동휠체어충전소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외 북측에 15m도로, 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107동 | 주동 북측 및 북동측에 중앙광장, 휴게쉼터, 어린이집 및 유아놀이터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남동측에 주민운동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남서측에 주민공동시설 및 선큰, 옥외계단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북서측에 어린이 놀이터, 옥외계단 및 옥외엘리베이터, 재활용품보관창고, 경로당, 관리사무소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저층부에 재활용보관창고, 옥외계단 및 옥외엘리베이터, 주민공동시설 및 선큰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남서, 남, 남동측에 인접대지와의 레벨 극복을 위한 옹벽이 위치(거리 약9m)하고 있어, 조망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지하층에 옥외계단 및 옥외엘리베이터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외 남서, 남, 남동측에 공공공지, 하천(창곡천), 보행과, 보행자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분진, 악취, 벌래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108동 | 주동 북측에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관리사무소, 휴게정원, 옥외계단 및 엘리베이터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북서측에 지상주차장, 휴게정원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남측에 텃밭, 남서측에 지상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저층부 동측에 주민공동시설 및 선큰, 옥외계단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서, 남서, 남, 남동측에 인접대지와의 레벨 극복을 위한 옹벽이 위치(거리 약13m)하고 있어, 조망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지하층에 우수저류조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외 남, 남동측에 공공공지, 하천(창곡천), 보행자, 보행자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분진, 악취, 벌래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109동 | 주동 북측, 북동측에 단지출입구, 문주, 경비실, 차량회차공간, 지하주차장램프, 키즈스테이션, 통학안전지대, 지상주차장,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남동측, 동측에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소, 경로당, 옥외계단 및 엘리베이터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남측, 남서측에 지상주차장, 휴게정원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북측에 인접하여 지하(지반 내)에 근린생활시설용 정화조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 악취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북서측에 인접대지와의 레벨 극복을 위한 옹벽이 위치(거리 약22m)하고 있어, 조망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외 북측에 15m도로, 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110동 | 주동 북측에 지상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남측에 지상주차장, 옥외계단, 주민운동시설, 휴게정원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서측에 인접대지와의 레벨 극복을 위한 옹벽이 위치(거리 약3m)하고 있어, 조망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북측에 인접대지와의 레벨 극복을 위한 옹벽이 위치(거리 약21m)하고 있어, 조망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외 북측에 15m도로, 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외 서측에 15m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115동 | 주동 남서측에 휴게정원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남동측에 옥외계단, 어린이 놀이터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북측에 인접대지와의 레벨 극복을 위한 옹벽이 위치(거리 약10m)하고 있어, 조망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외 북측에 하천(창곡천), 보행교, 보행자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분진, 악취, 벌래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116동 | • 주동 북동측에 휴게정원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 | 주동 남서측에 어린이놀이터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북측에 인접대지와의 레벨 극복을 위한 옹벽이 위치(거리 약6m)하고 있어, 조망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지하층에 지하주차장 차량용 통로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외 북측에 하천(창곡천), 보행교, 보행자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117동 | 주동 서측에 휴게정원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남동측에 단지 보행출입구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북측 및 북동측에 휴게정원, 주민운동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서측에 옥외계단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북측에 인접대지와의 레벨 극복을 위한 옹벽이 위치(거리 약10m)하고 있어, 조망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지하층에 옥외계단, 우수유출저감시설, 지하주차장 차량용 통로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외 북측에 하천(창곡천), 보행교, 보행자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분진, 악취, 벌래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118동 | 주동 북측에 단지 출입구, 문주, 경비실, 지하주차장램프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서측에 재활용보관창고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남측에 휴게정원, 주민운동시설, 단지 보행출입구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북서측에 인접대지와의 레벨 극복을 위한 옹벽이 위치(거리 약13m)하고 있어, 조망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남측 및 남동측에 인접대지와의 레벨 극복을 위한 옹벽이 위치(거리 약3m)하고 있어, 조망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지하층에 지하주차장 램프, 정화조, 우수저류조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 분진, 악취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외 북서측에 하천(창곡천), 보행교, 보행자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분진, 악취, 벌래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외 북동측에 20~24m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기타 유의사항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함.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도 있음.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본 모집공고의 제반 내용 및 건립된 분양사무실 2021년 2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 하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상호정산하기로 함.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음.
- 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으로 통보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통보 누락으로 인한 당첨자의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일절 책임 지지 아니함.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단지배치, 단지내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 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대지 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외도로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본 주택의 판매 시점에 따라 분양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시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인접지역 개발 등의 사업으로 개설되는 도로 및 개발계획 등은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도로 및 개발계획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일부 변경될 수 있으

므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바람.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당사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음.
- 단지 내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위탁자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음.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종료일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까지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동법 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세대에 부과하고, 단지별 시설차이로 인한 일반관리비는 상이할 수 있음.)
-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단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서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선형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공동주택의 명칭 및 단지 내 명칭, 동 번호는 입주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분양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므로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용검사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사용검사 전·후 최종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 관 주도의 계획에 의한 주변 개발 계획은 관련 인 허가청 주관사항으로 당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같은 타입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음.
- 입주예정자 참여형 감리보고제 시행에 따라 분기별 감리 보고시 입주예정자는 참여가 가능함.

■ 세대 / 규격

• 분양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커뮤니티 시설

- 분양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집기는 재질, 색상, 디자인 등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의 구성에 대하여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관련 시설은 입주 시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함.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제공집기 및 마감재도 변동될 수 있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적용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작은 도서관, 휘트니스시설 등) 어린이집, 경로당, 지하주차장, 어린이놀이터, 옥외 주민운동시설, 경비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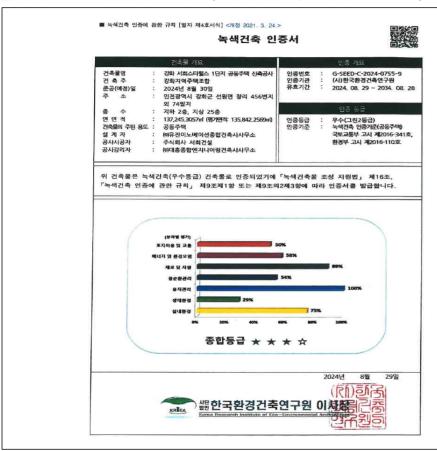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에 의거 공동주택 성능에 대한 등급,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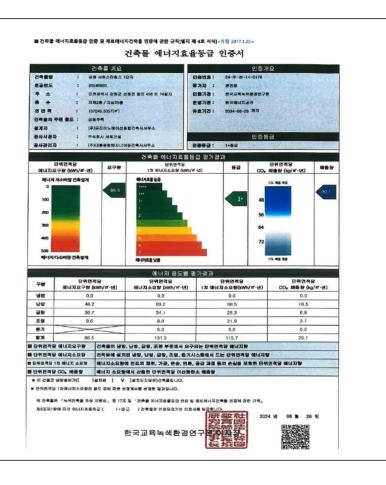
-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 항목 | 적용 여부 |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
|-----------------|-------|--|
| 가. 의무사항 이행여부 검토 | | |
| ① 고기밀 창호 | 적용 | 외기직접면한 창의 기밀성능은 KS F2292 1등급이상 |
| | | 급수펌프(부스타펌프), 고효율 변압기 |
| ② 고효율기자재 | 적용 | 전동기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 |
| | | 급탕 및 급수펌프는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 사용 |
| ③ 대기전력차단장치 | 적용 | 대기전력전동 차단 콘센트(세대내 거실, 침실, 주방) 설치 |
| ④ 일괄소등스위치 | 적용 | 단위세대 현관에 설치 (1EA) |
| ⑤ 고효율조명기구 | 적용 | 단위세대, 공용부, 부속동 |

| |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조명기기로 |
|-----------------|----|--|
| | | 정의되는 제품을 세대 및 공용부위 내 사용 |
| ⑥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 적용 | 공용화장실에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
| ⑦ 실별 온도조절장치 | 적용 | 단위세대 내 각 실 온도조절장치 설치 |
| | 적용 | 수도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녹색건축예비인증,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





■ 기타

- 본 아파트는 개별난방이 공급될 예정임.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 3 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함.

| 구분 | 등급 | | |
|------|------------|--|--|
| 내진능력 | VII−0.204g | | |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 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MMI등급, I~VID으로 표기

■ 감리자 및 감리금액(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 | 구분 | 건축/토목/기계 | 전기 | 소방 / 통신 | | | | |
|--|----|----------|----|---------|--|--|--|--|

| 회사명 | ㈜대흥종합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한진엔지니어링 | ㈜한진엔지니어링 |
|-----------|-------------------|--------------|--------------|
| - 감리금액 | 2,405,685,560원 | 861,302,180원 | 582,780,000원 |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 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 구분 | 사업주체 | 공동사업주체 및 시공사 | 자금관리자 |
|---------------------|-----------------------|----------------------------------|---------------------------------------|
| 상호 | 강화지역주택조합 | ㈜서희건설 | (주)무궁화신탁 |
| 주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 176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중앙로 210, 3층 304호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포스코타워P&S타워 22~24층 |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770-14-01027 | 110111-0335912 (220-81-19330) | 120-86-58362 |

■ 분양 사무실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 176

■ 분양문의 : ☎ 032)933-7019

■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gh-starhills.com

※ 강화지역주택조합, ㈜서희건설, ㈜무궁화신탁 간 체결한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 관련내용에 의하여 ㈜무궁화신탁이 사업토지 매매대금, 모델하우스건립비, 분양경비, 사업관련 제세공과금 등을 포함한 사업비의 용도로 집행한 자금에 대해서 수분양자는 추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 ㈜무궁화신탁은 본 사업과 관련된 시공사, 사업비조달, 사업추진여부, 행정업무 등에는 관여하지 않고 조합원분담금 및 일반분양대금 등의 순수 자금관리만을 담당한다.

※ 수분양자는 자금집행, 환불 등과 관련하여 ㈜무궁화신탁을 상대로 이의(민원, 소송)를 제기하지 않는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분양사무실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고,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 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함).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의 내용은 최근까지("24.12.18)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 반영된 참고자료로서 지역과 주택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